



200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 세법

자료제공 : 국세청 납세홍보과 오창윤 (02-397-1397)

I.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이므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금액([표 1] 참조)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3-1. 주요경비의 범위

[표 2] 참조

3-2.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법의 규정에 의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표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업종구분	연도별	2002년~ 2003년 귀속	2004년~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1억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표 2] 주요 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재화의 매입'은 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 운송업의 운송비는 운송업과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댓가로 지출하는 금액 ·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보관하면됨)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시기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모두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합니다.

즉 2002년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2003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5.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10%, 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 3] 참조

(표 2) 기장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신고 비교

구분	기장신고에 의한 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신고방법	기장신고	추계신고
소득금액계산	수입금액에 기장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수입금액에서 실시 지출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준 경비율에 의해 추계한 비용의 합계액을 공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장세액 공제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 공제 (산출세액의 10%)	해당없음
무기장가산세	해당없음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20%부과
소득세조사	비용에 대한 소득세 조사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사실 확인 ※종전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비용을 밝힐 책임이 없었음

II. 주요 개정 세법 내용

1. 법인세법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폐지	• 비상장대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또는 대규모기업 집단소속)이 그 이익을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유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유보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법인세 추가	〈폐지〉	• 법인세법(2002.1.1)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가산세 폐지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	〈폐지〉	• 법인세법(2002.1.1)
•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되는 대기업 범위 규정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중기업 제외) • 대규모기업 집단소속법인	• 현행 동일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 1,000억 초과 기업	• 법인세법 제28조 (2002.1.1)
• 특별부가세제도 폐지	• 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15% 세율로 과세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2002.1.1)
•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접대비중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지역 별로 정한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41조 소득세법 제35조 (2002.1.1)
•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율인하	• 사업자 또는 법인이 10만원이상 재화·용역 거래시 세금 계산서, 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외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거래금액의 10%가산세 부과	• 가산세율을 2%로 인하	• 소득세법 제81조의 ④ 법인세법 제 76조 (2002.1.1)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추가〉	• 공익 신탁하는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2002.1.1)



2. 조세특례제한법

제 목	종 전	달라 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중소기업 IT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 설〉	• 중소기업이 중기청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ERP또는 전자 상거래시스템 설비 비용을 지급받는 연도에 비용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공포일부터)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 설〉	• 중소기업이 전자입찰방식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하고 전자결재망을 통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대금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3(2002.1.1)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지원대상업종제조업·광업·물류산업 등 8개업종	• 지원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002.1.1)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 제조업, 건설업 등 16개 업종	• 종자 및 모목산업과 축산업을 대상업종에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2.1.1)
• 기업의 어려움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보완	• 적용대상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 구매자금대출	• 기업구매전용카드 중 금융 기관이 납품중소기업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제외 대출기한이 납품 일로부터 1월이내이고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을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2002.1.1)
•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3%(중소기업 5%) -대상자산:중소제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ERP설비 및 전자상거래 설비 등 -수도권투자 공제배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사업용 자산,POS설비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는 공제 배제	-공제율: 중소기업의 ERP설비는 10%로 상향 -대상자산:자동화·정보화설비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를 정보화설비에 포함 -수도권투자 공제허용 -정보보호시스템을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추가 -수도권내 투자도 세액공제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24조,제130조'(2001.9.3)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5% • '90.1.1이후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 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 •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2001.9.3)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개선	• 감면세액 상당액을 2년내에 장기(1년6월이상)차입금 상환 또는 5년내에 사업용고정자산 투자 • 중소기업인의 '00년이전 감면분은 '01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2년내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고정자산 투자에 사용	• 1년6월 이상 장기차입금→ 모든 차입금 • '00년 이전 감면분은 차입금 상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20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법인 본사·공장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법인 모든 업종의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매매업·임대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의2(20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요건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요건 2년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20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등이 개인·면세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경우 -폐자원수집가액의 10/11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세액공제를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20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감면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기준금액 -관광호텔업 : 3천만불이상 -종합휴양업 : 5천만불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액축소 -2천만불 이상 -3천만불 이상 • 신설 : 3천만불 이상의 물류업종 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단지·항만시설 운영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2002.1.1)

3. 부가가치세법

제 목	종 전	달라 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도 수출 등을 수출의 범위에 추가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도수출·중계무역수출·위탁판매수출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출의 범위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법 시행령 제 24조(20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용부동산의 전대시 임차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계산 - 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과세대상일수/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임차금을 과표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법시행령 제 49조의2(20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 매입세액 전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보유중인 재고물품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 -단, 재고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환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법시행령 제6 조3의3(2002.1.1)